

#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운영계획서

현장실습지원센터 2020. 11.

## □ 현장실습 개요

### ○ 현장실습 용어 정의

- ‘현장실습’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습 기관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함
- ‘실습생’이란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 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본 대학의 학생을 말함
- ‘실습기관’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

### ○ 현장실습 실습 기간 및 실습 조건

- 실습 기간 : 2020.12.24.(목) ~ 2021.02.05.(금)
- 실습 조건 :
  - (1) 현장실습은 명시된 실습 기간 사이에 진행함  
 ※ **마지막 실습 가능 시작일 : 2021.01.11.(월)**
  - (2) 현장실습은 2, 3년제 학과 모두 최소 4주 이상(160시간 이상), 하루 8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함
  - (3) 현장실습의 실습 일수는 원칙적으로 토요일, 법정공휴일, 현장실습 기관의 휴일 등이 제외된 기간으로 산정함
  - (4) 현장실습은 3년제 학과는 2학년 하계 방학부터 2년제 학과는 1학년 동계 방학부터 가능하며, 졸업 학기 전 방학까지 매 학기 방학을 이용하여 실습기관 현장실습이 가능함

### ○ 현장실습 일정

구분	세부일정	비고
실습기관 접수(기관)	2020.11.27.(금) ~ 2020.12.23.(수)	공문/e-메일/팩스
현장실습 신청(학생)	2020.11.27.(금) ~ 2020.12.03.(목)	- 현장실습 DOIT 신청은 2020.12.03.(목)까지 가능하고, 기업 매칭 및 학생 선발은 2021.01.04.(월)까지 가능함 - <b>졸업 예정자(2021년 2월)는 현장실습 신청 불가</b>
현장실습 사전교육	1차 : 2020.12.07.(월) 2차 : 2020.12.09.(수)	-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온라인 사전 교육 진행 예정 - 사전교육은 1,2차로 진행 - 사전교육 불참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진행

구분	세부일정	비고
실습보험 가입	2020.12.14.(월)	업체 상황에 따라 일정변동
시행 기간	2020.12.24.(목) ~ 2021.02.05.(금)	- 총 6주 기간 내 최소 4주 (20일, 160시간)이상 실시 (휴일, 공휴일 미포함) - 마지막 실습 가능 시작일 : <b>2021.01.11.(월)</b>
학생 서류 제출	2021.02.10.(수)까지	현장실습 관련 서류를 학과로 제출함
성적평가 및 입력	2021.02.15.(월) ~ 2021.02.16.(화)	현장실습 지도 교수 성적 입력
성적 이의제기 기간	2021.02.17.(수)	실습생 성적 확인 및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
학과 서류제출	2021.02.18.(목)까지	현장실습지원센터로 현장실습 관련 서류 제출

※ 현장실습 일정은 코로나-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□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주요 운영사항

- 현장실습 시행 전에 학과로부터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수합하고, 시행 후에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 및 실습 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, 이를 차기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- 일 8시간, 4주(총160시간)를 실습 이수 원칙으로 하되,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시 학과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해당 사유로 인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실습 취소 전환(※해당 사유를 제외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 포기시 기존 규정에 따라 미이수로 진행)
- 교육부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(교육부 고시 제2017-115호)을 준수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함
- 고용노동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123조(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)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를 준수하여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한 산업체에만 현장실습을 진행(**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현장실습 참여 불가**)
- 숙식비, 교통비, 실습 수행비, 교육 장려금 등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도록 함(**실습지원비 미지급 업체 현장실습 참여 불가**)
- 휴식시간, 휴일 및 기타 복리에 대한 사항은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 제 5조에 명시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현장실습 기관의 내규에 따르도록 함
- 현장실습 업체 발굴은 과년도 실습 기관 방문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의뢰하며 학교 앞선 현장실습 희망자를 접수하여 실습업체를 매칭함

- 각 학과별로 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과 실습기관 간의 전공일치 여부 및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함
-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며 실습 시행 전에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, 산업 안전 보건교육,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교육함  
(※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(과)에서 개별 교육 진행함)
- 원칙적으로 토요일, 법정공휴일(일요일)의 실습은 실습 일수에 산정하지 않음
- 취업한 회사에서의 현장실습(재직중인 자, 조기 취업자 포함)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
-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학생의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
-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취업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차기 현장실습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
- 현장실습 성적입력 및 실습업체 관리 등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종합관리시스템(DOIT)을 활용함
- 현장실습 시행 후, 현장실습 실습 기관 및 현장실습생들에게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 및 보완점을 파악하고 차기 현장실습 운영 방향에 반영하고자 함
- 현장실습 실습학생들의 원활한 현장실습 수행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지원비(최대 40만원까지)를 지원함
  - \* 실습기관과 협약한 실습지원비가 40만원 미만일 경우, 부족분에 대하여 우리 대학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함
  - \* 단,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는 자(개인사유, 코로나-19로 인한 격리 등)는 실습지원비 지원이 불가함

## □ 현장실습 운영 체계

### ○ 현장실습지원센터

-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, 규정 및 시행지침의 제·개정 등 운영에 관하여 총괄 조정하며 학과의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함

### ○ 학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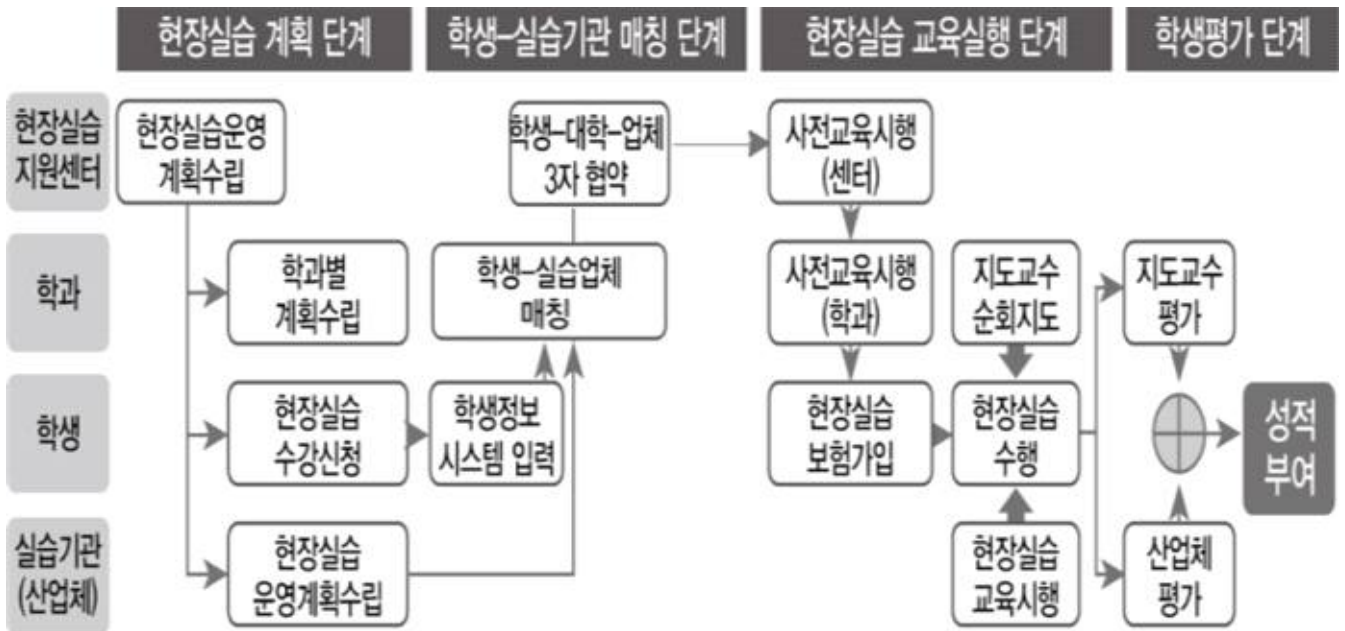
- 각 학과의 장은 다음 각 사항을 관장함
  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관련 안전 교육 및 예방법 안내
  - 현장실습 일정 및 사전교육 사항 안내
  - 안전 및 예절교육
  - 학과별 현장실습 프로그램
  - 현장실습 평가에 관한 사항
  - 현장실습 중지 사유

### ○ 실습기관

- 각 실습기관의 산업체 담당자는 다음 각 사항을 관장함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관련 안전한 실습환경 제공 및 안전 교육 협조
- 현장실습생 교육 사항
- 실습생 안전관리
- 현장실습 평가에 관한 사항
-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

□ 현장실습 총괄 FLOW



□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운영

○ 현장실습 협약 체결

- 현장실습지원센터 - 실습생 - 실습기관 3자간 현장실습 협약(서식)을 체결하여야 함
- 현장실습 협약서는 현장실습의 기간 및 장소,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(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), 실습지원비 등의 내용을 포함함

○ 실습기관 신청 및 배정

- 현장실습 공고일 이후 대학이 정하는 기간에 현장실습을 신청하여야 함
- 학과에서는 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학생에 적합한 현장실습 업체를 배정함

○ 실습기관 현장실습생 배정시 유의사항

- 해당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희망자의 적성, 희망직종 및 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요구 사항(인원, 세부전공, 직종, 지역 등)을 고려하여 배정
-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추천 및 파견을 할 경우, 현장실습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, 실습환경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
-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업체의 규모, 견실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적정성 여부를

판단하고, 현장 실습생 추천시 현장실습 업체의 실습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함

-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대상 업체에 배정이 확정된 경우에 실습생 보험 가입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

#### ○ 현장실습 사전교육

- 현장실습 신청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의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
(※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전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, 학과에서 별도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함)
- 현장실습 진행 절차 및 안내 사항 전달
-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CS/안전/태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, 현장실습 운영 절차 안내,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작성 방법으로 구성됨

#### ○ 실습생의 보험가입

- 단기 실습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 유의토록 함  
※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거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산재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함

#### ○ 현장실습 순회지도

-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생들의 실습상황 파악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습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습 기관을 방문하고, 방문경비는 「산학협력지원경비 운영지침」 제5조(경비 신청대상 및 지급항목)에 따라 학부(과)별로 지원함

#### ○ 현장실습 성적 평가

- 실습기관평가서(50%), 순회지도(30%), 현장실습일지 및 기타 과제물(20%)을 근거로 현장실습 성적을 평가함
- 성적 평가는 지도교수별로 학생종합관리시스템(<https://doit.dongyang.ac.kr/>)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함  
※ 현장실습 성적 평가 결과표는 현장실습에 대한 근거 서류로 5년간 보관하며, 현장실습 지도수당 지급시 정산자료로 활용됨

### □ 실습기관 현장실습 운영

#### ○ 실습기관 발굴

- 학과에서 현장실습 승낙서를 접수하고, 학생과 실습기관을 매칭함
- 실습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가족회사 DB를 구축하여 현장실습 대상 기관을 확대함
-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통하여 발굴된 전담 실습기관에 현장실습생 배정을 확대함
- 대규모 사업장과 산학협동 협약체결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현장실습기관 발굴함

○ 실습기관 자격요건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
-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립된 실습기관으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실습기관
-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 및 시설 설비와 복리후생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
- 실습생에게 숙식비, 교통비, 실습 수행비 등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관
- 각 학생별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관
- 기타 총장이 인정한 실습기관

○ 현장실습 수당

- 실습업체는 실습학생에게 식비, 교통비, 실습 수행비, 교육 장려금 등 교육지원비용으로써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하여야 함

○ 실습기관 제출서류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안전 서약서(학생용, 산업체용)
-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대응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학생들에게 안전한 실습환경을 제공하도록 안전 서약서를 작성함
- 현장실습 승낙서
-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공고 이후 대학이 정하는 기간에 현장실습 승낙서를 제출하고 추천을 받아야 함.(현장실습 승낙서에는 기업에 대한 홍보자료와 함께 현장실습생에 대한 간단한 자격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)
- 실습기관 현장실습 운영계획서
-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운영 전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정보,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금액, 현장실습 운영 목표, 현장실습 수업계획 등 내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와 협의하여야 함.
- 현장실습 실습기관 평가서
- 실습기관은 실습학생들의 출결사항, 실습태도, 실습능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'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서'를 각 학생별로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함.
-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
- 우리대학 현장실습생에 대한 이미지, 자질 및 실습성과 평가를 통해 산업체의 요구를 분석하고,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'현장실습 만족도 조사' 설문지 제출 요청 (작성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 됨)
- 실습기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실습기관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사업 프로그램에 따른 인건비, 수당 지급 및 설문조사, 감사 및 실태조사 등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통계 작성에 이용되는 실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는 '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'를 제출하여야 함(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)

## □ 현장실습 서류양식

### ○ 현장실습 서류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안전 서약서(학생용, 산업체용)
- 현장실습 승낙서
- 현장실습 협약서
- 실습기관 현장실습 운영계획서
-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서
- 현장실습 만족도조사(실습기관 담당자용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실습기관용)
- 현장실습 산업체 변경 요청서(\* 해당사항이 발생할 경우)
- 「실습지원비」 미지급 확인 및 의견서(\* 해당사항이 발생할 경우)
- 현장실습 학과 사전교육 시행 결과보고서
- 현장실습 학과 순회지도 계획서
- 현장실습 학과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학생용)
- 현장실습 「실습지원비」 지급 증빙서류
- 현장실습 교육일지(학생용) - 온라인(DOIT)
- 현장실습 종합보고서(학생용) - 온라인(DOIT)
- 현장실습 만족도조사(학생용) - 온라인(DOIT)